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1. 15 선고 2024가단108307(본소), 2024가단118380(반소)

판결 [청구이의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진상원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이항미, 강한솔

변론 종결2024. 10. 11.

판결 선고2024. 11.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차전1661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예비적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22. 4. 27.경 경남 하동군 D 외 4필지 지상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2023. 4. 10.경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23. 7. 13.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369,000,000원을 C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기지급 기성금 ₩170,000,000원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후 잔금 ₩369,000,000원을 직불한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B (주)	E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	-------------	--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라. 피고는 2024. 2. 19. 이 법원 2024차전1661호로 원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4. 2. 26.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4. 2.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24. 3. 1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인 C이 수급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C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권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접 지급 합의가 아니라

기재된 그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한 직접 지급 합의이고, C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여부 원고, 피고 및 C이 위 하도급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여부 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전해주려는 하도급법 제1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이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부담하거나,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사적 자치의 원칙상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지급 합의를 함에 있어서 하도급법의 규정과 다른 다양한 내용의 개별적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그 합의의 법적 성질이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 합의인지, 아니면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 합의와 유사하나 수급인의 대금지급청구권도 하수급인의 권리와 함께 존속하는 병존적 합의인지, 또는 일반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다른 유형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초로 한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한편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5, 16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피고, C 사이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 내지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 등은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안에서 C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인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하도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로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의 내용과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우연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 서식을 찾아 이용하게 되어 이와 같이 작성되었다고 변명하나, 만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합의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위 서식을 이용하더라도 이와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으로 목적하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합의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원고의 변명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F은 202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단 813433호로 원고를 채무자, C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5억 원(제3채무자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청구금액 10억 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C에 송달되었다. 또한 C과 원고는 피고 외의 다른 수급사업자들과도 이 사건 합의서와 비슷한 내용의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등의 작성 전에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상황에서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가 설령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가압류되지 않은 부분 금액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피고를 비롯한 수급업자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와 C으로서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한다면 자신들에게 상당히 불리해지는 상황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합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와 C이 그러한 불리한 상황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C을 상대로 청구금액 1,774,000,000원의 공사대금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4. 3. 27. 부동산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카단10619호)을 받았는바, 당시 위 청구금액에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 등을 청구금액에 포함하여 C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원고의 행동은 이 사건 합의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④ 2024. 3. 25.자 C과 피고 사이의 합의서 및 2024. 4. 17.자 원고, C, 피고, 다른 수급업자들 사이의 동의서의 내용 역시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F이 받은 가압류결정의 본안 소송 결과가 있을 때까지 피고 등이 C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보류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인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소송의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러한 예비적 반소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은 본안재판에서 반소비용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참조), 피고의 예비적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변지영